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9. 12. 30.(월) 14: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김석진 부위원장 (1인)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별 확인을 거쳐 차기회의에서 접수기로 함

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⑥ 의결사항

가.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 (2019-67-330)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에 대해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에 대해 재허가 청문(12.23.)을 실시한 결과,
- 재허가 심사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하되,
-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주요 재허가조건

1.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 2~7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2.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매년 4월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3. 위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별도로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추가 이행계획'(17·'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미이행 관련 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매년 4월말 제출하는 이행실적과는 별도로 2분기, 3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4. '19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본사)의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재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연도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유동성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 시 약속한 30억원 자금대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7. 최다액출자자는 외부기관의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최다액출자자의 지원사항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경기방송 (2019-67-331)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경기방송’에 대해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에 대해 재허가 청문회 (12.23.) 등을 실시한 결과,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하되,
 -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주요 재허가조건

1.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중 아래 2~4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2. 경기방송은 이 조건을 통보받은 즉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3. 경기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및 경영 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공개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
 -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4.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티비씨 (2019-67-332)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티비씨’에 대해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주)티비씨의 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청문(12.23.)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허가 심사 위원회의 재평가(12.27.)를 실시하여,
- 재평가 결과 650점 이상~700점 미만으로 평가된 동 3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 기간 4년을 부여하고, 12.13. 신청한 (주)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향후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7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회의는 2020년 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5:42)